현황과 전망

국제 농식품 위해정보교류체계 구축현황

신속한 정보수집 · 제반조치 통해 잠재 위해로부터 소비자 보호

WHO의 INFOSAN과 EU의 RASFF, 일본의 식품안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 및 선진 외국에서는 식품안전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교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머릿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농축산식품 중에 포함된 농약, 다이옥신, 중금속, 내분비계장애물질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고 급식산업, 외식산업의 발달과 가공식품의 이용 증가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살모넬라, E. coli O157, 광우병, 조류독감,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 등 생물적 위해가능물질이 전 세계적 식품안전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산 유제품의 멜라민 파동처럼 불법적인 식품오염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식생활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WTO와 FTA체결 증가로 농식품의 수출 · 입이 자유화되고 양적으로도 확대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매우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농축산식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오염된 식품원료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와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국민의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신감도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농식품안전 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관련 위해물질, 식중독사고 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확산을 통해 국내외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합적 국가 농식품 위험정보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국제적 위해정보교류시스템과의 유기적 정보공유 네트워크 개발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식품오염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전파하고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국제적 식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된 국제적 위해정보교류 네트워크인 WHO의 INFOSAN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y Network)과 EU의 RASFF(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의 운영현황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통합적 국가 농식품 위험정보교류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WHO의 식품 위해정보교류체계(INFOSAN)

농식품의 국제교역증대로 식품안전사고도 대형화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적 식품안전정보 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하여 자연 발생적 또는 의도적 첨가, 또는 오염에 의한 식품 관련 건강위기 상황에 대해 전세계 국가가 공동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 주요 식품 안전정보를 각국의 접촉창구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관련 국가에 전달하는 글로벌 식품안전정보네트워크(INFOSAN)를 구축하였다.

INFOSAN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우발적, 국제적 오염으로 인한 국제 식품안전 사고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각 회원국가가 오염사고에 대해 긴급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긴급대응 네트워크임과 동시에 일상적인 국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푸드체인(food chain)의 모든 책임자 사이에 상호이해와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INFOSAN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식품안전 위기대응시스템을 포함하여 강력한 식품안전기반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김병석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과

각 회원국들은 하나의 INFOSAN 응급접촉창구(Emergency Contact Point)와 하나 이상의 INFOSAN Focal Point(s)를 부여 받을 수 있고 회원 가입자격은 국제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선정된 정부 대표자들로 제한된다. 2007년 10월까지 160여개국이 350개 이상의 지정된 INFOSAN 응급접촉창구와 Focal Points를 가지고 있다.

'INFOSAN 응급 접촉창구'는 INFOSAN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과 동시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급상황시 관련정보를 접수하고 급박한 정보를 전파하여 국제적 위기대응 체계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자국내에서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각 회원국에서 발생한 건강상의 응급정보를 'INFOSAN응급 접촉 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별국가에서 접수된 응급정보는 160 여 회원국의 INFOSAN 접촉 창구로 통보되며 때로는 관련 정보의 민감성에 따라 직접 관련된 개별국가에만 통보되기도 한다.

INFOSAN은 격월로 'WHO Food Safety Newsletter'를 발간하여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온 조류 인플루엔자, Enterobacter sakazakii, 아크릴아마이드 등의 중요한 식품안전정보를 회원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INFOSAN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 www.who.int/ foodsafety/fs_management/infosan/en에 들어가면 된다.

3. EU의 식품 · 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EU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사료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해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식품안전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EU 국가간의 통일된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구축한 식품 · 사료신속경보시스템이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통지받은 위해식품 실적을 매주 공표하여 소비자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위해식품정보를 공개한다. 공표내용에는 식품유형, 위해요소, 제품발견 국가, 제품생산 국가 등이 포함되나 관련 회사명 등과 같은 상업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제외하고 있다.

현재 RASFF의 회원은 27개 EU회원국가와 EU, EFSA 및 EEA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총 32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RASFF의 운영은 EC No 178/2002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4. 기타 국가의 식품위해정보 체계

일본의 식품안전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안전성본부와 식품안전위원회가 국내외 최신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업데이트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내외에서 수집 · 분석한 식품안전성 정보와 제외국의 화학 물질, 미생물 등에 의한 식품 위해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성(USDA)의 식품안전연구정보(Food Safety Research Information)센터에서 식품안전업무 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식품안전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정보교류시스템(web site)을 운영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관련 뉴스와 정보,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 및 전문 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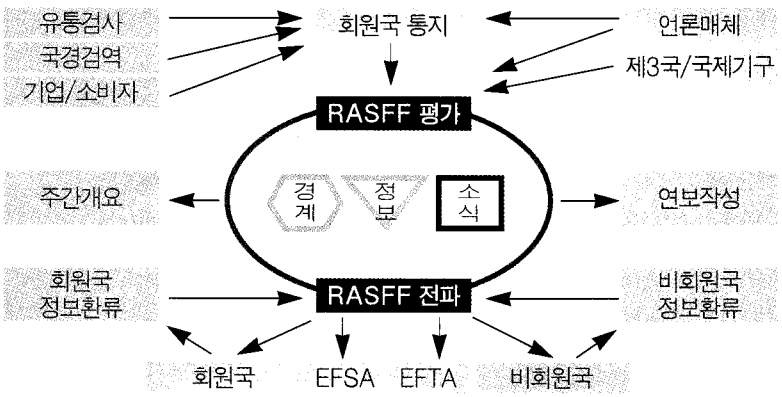

그림 2. RASFF의 정보네트워킹 흐름도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안전관련 부처가 가공식품을 다루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축산물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표 1. RASFF 통지 종류

	- **경계통지(Alert Notification)** : 유통 중인 식품이나 사료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발령하며, 회원국은 해당식품 및 사료를 회수조치하거나 생산 중단
	-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 : 식품 및 사료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되었으나 아직 타 회원국에서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 경우 발령하며, 대개 수입식품의 통관 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
	- **소식통지(News Notification)** : 위해문제가 발견되어 EU 국경에서 반입이 거부된 식품 및 사료에 대해 발령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거부된 제품(border rejections)이 다른 검역소를 통해 EU로 재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검역소로 통지

이원화 되어있어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이 각기 달리 운영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위해정보 신속 수집 · 공유 및 조치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품으로 기인한 심각한 위해 및 잠재적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정보 수집과 제반 조치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Farm to Table)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축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농축 수산물 안전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위험 정보를 수집 · 전파, 환류(feedback)하는 위험 정보 채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5. 맺음말

신속한 식품안전정보교류체계 구축을 통해서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농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신속히 금지하는 것은 문제의 농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에 해당 농식품을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WHO의 INFOSAN과 EU의 RASFF, 일본의 식품안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 및 선진 외국에서는 식품안전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전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교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및 국내 생산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출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식품안전정보교류체계를 기업, 생산자, 소비자, 정부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시스템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제외국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 web site가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 지도할 필요도 있다.